

서울고등법원 2024. 9. 25 선고 2024나2009882 판결 [주식매매대금 등 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9. 25 선고 2024나200988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2가합51834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1. 주식회사 A

2. B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움

담당변호사 김진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1. C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2. D 주식회사

3. 주식회사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이선영, 이완수

변론 종결 2024. 8. 28.

판결 선고 2024. 9. 2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2가합518341 판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C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1.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1,999,848,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들은 각 299,977,2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1,999,848,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D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E은 각 299,977,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C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표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③ 회사 및 이해관계인, 전략적투자자는 전항의 계약상 지위 승계를 수인하여야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각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2면 제3행의 "뿐이다" 다음 부분에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계약 제9조와 같은 사전동의권을 규정하는 것이 투자관행이라고 기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이 사건 계약서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23면 제7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 제9조 등에 따라 보유하는 사전동의권은 이 사건 계약 제26조 제2, 3항에 따라 사실상 원고들이 인수한 주식 자체에 화체되어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종류의 주식을 사적으로 창설한 것으로 상법 제344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펀드가 피고 C의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전통지 내지 사전동의권을 갖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다. 설령 이 사건 계약

제26조 제2, 3항에 의하여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는 제3자에게 사전동의권 등의 이 사건 계약상 권리가 승계된다고 하더라도, 위 양수인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사전동의권 등의 이 사건 계약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취득한 주식 자체에 사전동의권 등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제36면 제12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제7호의 '기타 상기에 준하는 것'이란 '피고 C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즉 J투자조합은 피고 C의 최대 주주이고, 위 조합의 내부 출자지분 변경은 피고 C의 지배구조에 변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 점, 피고 C가 2021. 4.경 원고들에게 최대주주인 J투자조합의 내부 출자지분의 이전 및 유한책임조합원의 변동이 있을 예정임을 통지하였던 점, 피고 C는 주주명부 등에 관하여 이 사건 펀드의 별도의 요청이 없더라도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점(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2항) 등을 보태어 보면, J투자조합의 출자지분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투자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피고 C와 서면으로 요청한 사항'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 C가 원고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항의 자료제출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제37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피고들은 위약벌 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가 전혀 없다는 점, 원고들이 처음부터 본건 유상증자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액 사유로 드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약벌 금액을 감액해야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위약벌 금액은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의 15%에 불과하여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과 피고 C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석조

판사배광국

판사박형준

1)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은 "회사와 주주가 체결한 동의권 부여 약정에 따른 차등적 취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약정을 함께 체결하였고 그 약정이 사전동의를 받을 의무 위반으로 주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 또는 전보하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회사와 주주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약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제20조에 따른 위약벌 약정이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여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